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1일
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용호, 김인제,
김종길, 문성호, 옥재은,
윤종복, 이민석, 이종환,
이효원, 황유정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
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
품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
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
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감독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5조(감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 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5조 (감독 등)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·신설 할 때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는 **절차적 사안**¹⁾이므로 별도의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재정수반 직접적 요인 부재] 절차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수반 요인 없음